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김경영 의원 외 19명

나. 의안번호 : 제479호

다. 발의일자 : 2019. 3. 19

라. 회부일자 : 2019. 3. 21

2. 제 안 사 유

-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되거나 분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3. 주 요 내 용

- 가.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되거나 분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고 있는 바,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도계량기 동파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현황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관리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0조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수도사업자(서울시)의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상한파로 인하여 수도계량기 동파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수도사용자등은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불편과 계량기 대금 부담의 경제적 손실을 2중으로 겪게 됨에 따라 2013년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시민편익 도모 차원에서 수도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2)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설비 관리 책임 강화(안 제42조제2항)

- 현행 조례 제42조제1항은 동파 발생시 수도계량기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편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빌미로 수도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최초 수도계량기 설치시 수도계량기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최소한의 설비 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내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경우 공사여건 변경(굴착 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제거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동파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공사장 수도계량기 동파현황〉

구 분	2017~2018년	2018~2019.2.15
전체 동파수	9,670	1,507
공사장 동파	605(6.2%)	295(19.5%)



〈공사장 계량기 보호통이 없거나(노출) 훼손 사례〉

- 공사장 내 수도계량기 무단 이설, 수도계량기 보호통 훼손 및 제거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20조에서는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수도 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 42조제6항에서도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도계량기 보호통 훼손 및 분실(제거) 등으로 보존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동파까지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수도 계량기 보호통 설치 목적 및 수도계량기 보호를 위한 수도사용자등의 최소한의 관리의무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42조제2항과 같이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동파에 한해서 수도사용자등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안 제42조제1항 중 ‘수도계량기의 기물’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도계량기와 수도계량기 보호통’으로 하고, 안 제42조제2항 단서의 경우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에 대한 수리 또는 설치 주체, 관련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안)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p>① <u>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u></p> <p>② <u>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① <u>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u></p> <p>② <u>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